

SFA 구매윤리규범

I. 구매윤리현장

에스에프에이 구매담당자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경영의 동반자인 협력사와 더불어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며, 항상 공정하고 청렴한 도적적 마음자세로 법규와 약속을 준수하는 정도구매를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상도위에 부합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일체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회사를 대표한다는 명예와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의 선정 및 구매결정 시 투명한 과정 공개와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수익성 향상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II. 구매윤리규범

제 1장 적용대상

에스에프에이 모든 구매담당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구매윤리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 2장 기본윤리

1. 모든 업무활동에 공(公)과 사(私)를 엄격히 준수한다.
2. 직위 및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한다.
3.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합법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기본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제 3장 명예와 품의

1.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을 생활화하여 자신의 명예와 품의를 지킨다.
2.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직원,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출신지역, 장애, 결혼유무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4. 가정이 바로 사회생활의 근원임을 인식하고 사치, 낭비, 허례허식, 도박, 과음을 지양한다.

제 4장 법규준수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구매 및 관련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규정 및 프로세스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회사 기밀사항, 신규 사업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를 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절대 유출하지 않으며, 상호합의 없는 절차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 또는 협력사의 기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한 삼가한다.

제 5장 직무윤리

1. 에스에프에이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라인(2016. 9. 28)'에 준하여 협력사와의 금품(금전, 현금성자산, 기타 유가증권 등), 선물, 기념품, 경조금, 경조물품, 접대(식사, 골프 등) 의 수수 및 특혜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거래기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3.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래업체나 단체에 투자하거나, 금전적 거래관계를 하지 않는다.
4. 가족 구성원 중, 에스에프에이와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부서장에 보고하며 사업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5. 회사와 무관한 개인신분으로서의 의견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6장 상생경영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거래선 등록의 기회를 부여하며 협력사 등록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2. 구매담당자는 협력사 선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협력사 선정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사에게 혜택을 주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상호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래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응한다.
5.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사와 함께 노력한다.

제 7장 구매윤리규범 준수

1. 구매팀원 모두는 구매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2.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알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과 협의한다.
3. 구매팀원 모두는 투명경영의 정착을 위해 구매윤리규범에 따라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한다.